

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안내문

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 간 “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”을 체결하여 공급되며,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.

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하며, ‘민간임대주택’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되는 주택입니다.

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,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차인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확인 필수사항

| 필수 확인사항 | 해당 법령 및 근거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 | [관련 법령, 협약 내용]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 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자, 임차사용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자, 임차사용승인의 신청일(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)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※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료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 |
| 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 | 대항력(점유, 전입신고)과 우선변제권(확정일자)을 갖춰야, 임차인 보호(선순위자)가 될 수 있습니다. ※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 |
| 최우선변제권 해당여부 | [관련 법령] 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제8조”에 따라 소액임차인(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)은 최우선변제권(대항력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)을 가짐 ※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(*서울시): 1억6,500만원 이하(23.02.21~), 1억5,000만원 이하(21.05.11.~23.02.21.) 최우선변제 금액(*서울시): 5,500만원 이하(26년 현재 기준, 따라서 5,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전액 환수 가능) ※ 대항력 요건 : 전입신고(*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) |
| 권리관계 등 상황 (*계약일, 전금일)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하며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※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|
| 원상복구 계약 전 |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. |

●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임차인 입주 중 확인 필수사항

| 필수 확인사항 | 해당 법령 및 근거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임대차계약 진행 시 누락사항 유무 확인 | 거주 중이더라도 위 ‘계약 진행 시 필수 확인사항’ 재점검 해보기 |
| ★보증보험 미갱신 확인★ | 거주 중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, 보증회사에서 통보하는 우편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)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(SGI) 임차인이 즉시 가입 |

※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, 계약(갱신),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(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: 02-793-0765~0768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: 02-2133-1200)

상봉역 청년안심주택 상봉동양엔파트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

(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66)

공공지원 민간임대

2026. 05. 21.

김대용

【주택개요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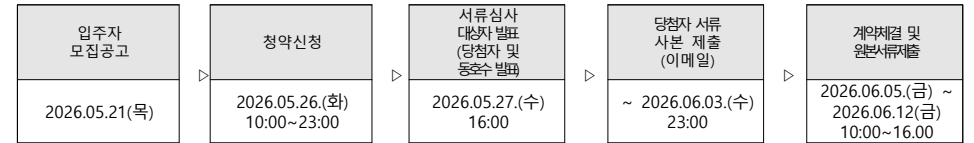
- 주택위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66 (7호선, 경의·중앙선, 경춘선 상봉역 5번 출구)
- 공급호수 : 총 299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197 세대 중, 금회 추가모집 공공지원민간임대 15세대
(특별공급 청년 3세대, 신혼부부 또는 청년 1세대), (일반공급 청년 6세대, 신혼부부 또는 청년 5세대)
- 단 지 명 : 상봉동양엔파트
- 시행사(임대사업자) : 김대용
- 시 공 사 : (주) 동양

- ※ **1인 1주택형(타입)에 대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이 모두 탈락 처리됩니다.**
- ※ **기존 계약자들은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**
- **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,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**
- **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**
- **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하여야 합니다.**
- **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**
- **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**
(단, 기준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에 한함)
- ※ **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5.21. 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(예비자 연락이 늦어질 경우 판단기준일 : 사업자 연락일일 수 있음)이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**
- **당 단지는 사용승인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. (감세대 호실별)**
(신규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기준에 따라 재가입 예정입니다.)
- ※ **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할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으며,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계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 (입주예정자께서는 계약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**
- ※ **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,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, 입주 예정계서는 계약전 반드시 대출 실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. *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**
- **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나 설정된 근저당금액으로 일반(개인)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, 계약 체결 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예정자에게 있으며, 개인사유 대출 불가 등 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 외 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시에는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)**
- **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여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보증금 보증기간 만료 전 "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기관(주택보증공사, 1566-9009)"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- **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**
- **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**
- ※ **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간 : 호실별로 상이. P4 각 호실별 보증보험 가입 현황 및 계획 참고**
- ※ **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이며, 보증보험 미갱신 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.**
- **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**
- **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**
- **본 추가공고와 최초공고(2024.03.22)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공고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본 추가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고를 따릅니다.**
- **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상봉역 청년안심주택 상봉동양엔파트 입주지원센터(02-493-1006)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**

■ 각 호실별 보증보험 가입 현황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구분 | | 근저당권 현황 |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(*보증금의 전액) | 현재 보증보험 만료일 (*만료일 전 갱신 예정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공급 | 403호 (18A) | 8,000,000,000원 (전 호실 동일) | 143,000,000 | 2026.08.08 |
| | 409호 (18C) | | 71,000,000 | 2026.07.25 |
| | 612호 (18C) | | 143,000,000 | 2026.07.14 |
| | 713호 (38C) | | 92,000,000 | 2027.01.13 |
| 일반공급 | 1111호 (18C) | | 54,000,000 | 2026.07.18 |
| | 1210호 (18C) | | 180,000,000 | 2026.07.31 |
| | 1301호 (18A) | | 72,000,000 | 2026.08.08 |
| | 1411호 (18C) | | 54,000,000 | 2026.07.31 |
| | 1705호 (18A) | | 144,000,000 | 2026.08.11 |
| | 1904호 (18A) | | 63,000,000 | 2026.08.05 |
| | 1213호 (38C) | | 314,000,000 | 2026.07.21 |
| | 1414호 (38B) | | 251,000,000 | 2026.08.15 |
| | 1417호 (38A) | | 251,000,000 | 2026.08.15 |
| | 1513호 (38D) | | 313,000,000 | 2026.08.15 |
| 2014호 (38B) | 313,000,000 | 2026.08.01 | | |

【공급일정 및 청약】



- **입주지정기간 : 청약 세대별 상이 (공급현황에 별도 기재)**
- **청약 문의**
 - 대표번호 : 02-493-1006, 월요일~금요일 10:00~16:00 (점심시간: 12:00~13:00)
 - 홈페이지 : <https://sbnpart.co.kr>
 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(02-493-1006)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청약 신청 : 네이버 폼 (<https://naver.me/xVRIM2dC>)**
 -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이메일(스캔본)로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-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3000%(30배수)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, 계약 후 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**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**
 - ※ **동일유형 타입내 예비자 호실 공유 불가**
- **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**
- **입주자 세대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.**
- **유의사항 :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**

[공급현황]

(단위 : 원)

| 유형 | 주거 전용 (타입) | 면적 | 보증금 50% | | 보증금 60% | | 보증금 80% | | 입주예정기간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보증금 | 임대료 | 보증금 | 임대료 | 보증금 | 임대료 | |
| 피아프 | 청년 | 18.03㎡ (18A) 403호 | | | | | | | 2026.08.14 |
| | | 18.22㎡ (18C) 409호 | | | 85,800,000 | 263,600 | 114,000,000 | 157,800 | 2026.07.31 |
| | | 18.22㎡ (18C) 612호 | | | | | | | 2026.07.24 |
| 피아프 | 청년 | 18.22㎡ (18C) 1111호 | | | | | | | 2026.07.10 |
| | | 18.22㎡ (18C) 1210호 | | | | | | | 2026.07.24 |
| | | 18.22㎡ (18C) 1301호 | | | 108,000,000 | 332,600 | 144,000,000 | 197,600 | 2026.08.14 |
| | | 18.22㎡ (18C) 1411호 | | | | | | | 2026.08.07 |
| | | 18.03㎡ (18A) 1705호 | | | | | | | 2026.08.14 |
| | | 18.03㎡ (18A) 1904호 | | | | | | | 2026.08.14 |
| 피아프 | 청년 또는 신혼부부 | 38.64㎡ (38C) 713호 | 132,000,000 | 544,500 | 158,400,000 | 445,500 | 211,000,000 | 248,200 | 2026.07.10 |
| 피아프 | 청년 또는 신혼부부 | 38.64㎡ (38C) 1213호 | | | | | | | 2026.08.21 |
| | | 38.56㎡ (38A) 1414호 | | | | | | | 2026.07.10 |
| | | 38.56㎡ (38A) 1417호 | 157,000,000 | 647,600 | 188,000,000 | 531,300 | 251,000,000 | 295,100 | 2026.08.07 |
| | | 38.60㎡ (38D) 1513호 | | | | | | | 2026.08.21 |
| | | 38.59㎡ (38B) 2014호 | | | | | | | 2026.08.07 |
| 소계 | | 15 | | | | | | | |
| 합계 | | 15 | | | | | | | |

- 임대보증금 비율은 50%, 60% 80%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나, 최초 계약이 아닐 경우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될 수 있습니다.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.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,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- ※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

[신청자격 및 제출서류]

-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5.21 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(예비자 연락이 늦어질 경우 판단기준일 : 사업자 연락일일 수 있음)입니다. (본인 인증을) 네이버폼을 이용하므로 네이버 청약 아이디 소유자와 청약 신청자 동일해야 하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- ※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
- ※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및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 *신혼부부의 경우, 청약자(당첨자) 명의로 계약 체결(공동명의 계약 불가)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)
 - 자동차가액 기준 : “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” 준용
- 그 외 신청자격 (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름. 단, 소득 및 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)

• 소득기준 - 청약 시 아래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순위 선택 필요
(청약 시 선택한 소득 수준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)

-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(단위 : 원)

| 순 위 |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순위 | 100% | 3,813,363 | 5,866,270 | 8,168,429 | 8,802,202 | 9,326,985 |
| 2순위 | 110% | 4,194,699 | 6,452,897 | 8,985,272 | 9,682,422 | 10,259,684 |
| 3순위 | 120% | 4,576,036 | 7,039,524 | 9,802,115 | 10,562,642 | 11,192,382 |

- ※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579,278원)을 합산하여 산정
- ※ 1인당 평균금액=(5인가구 월평균소득-3인가구 월평균소득) / 2

• 지역기준 - 동일 소득일 경우 지역 순위 적용

| 순 위 | 지 역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|---|
| 1순위 | 서울특별시 중랑구 | 거주자 :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 학 : 소재지 내 대학의 재적증명서 직 장 : 소재지 내 직장의 재직증명서 |
| 2순위 | 서울특별시 | |
| 3순위 | 그 외 지역 | |

• 자동차 가액기준 -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, 아래 가액보다 적은 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만 청약가능

| 자동차가액 |
|---------|
| 4,542만원 |

• 자산기준

| 청년 | (예비)신혼부부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30~39세 가구 기준 적용 | 소득 3분위 기준 적용 | |
| 251 | 345 | 단위 : 백만원 |

- ※ 청년안심주택 청년(본인) 자산 기준은 **30~39세 가구** 금액을 따름
- ※ 청년안심주택 (예비)신혼부부 (구성될)세대 자산 기준은 **소득 3분위** 금액을 따름

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별첨

- ※ “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”과 “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”의 차이
 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 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)

[당첨자발표]

- 당첨자 및 예비자는 2026.05.27.(수) 16:00 이후 에 단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당첨자 :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·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.
 - 예비당첨자 :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,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

[별첨]

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(최신)

- 특별공급 제출서류 *모집공고 이후 발행분

| 제출서류 | 발급처 | 유의사항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 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| 행정부지센터, 구청, 시청, 정부24(인터넷) |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 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” 추가 | | |
| 3. 주민등록초본 (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) | | |
| 4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| | |
| 5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” 추가 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 | | |
| 6. 월평균 소득(해당 세대원(인원) 전체) 및 자산 현황 확인서 | (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) | |
| 7. 공급신청서 | | |
| 8. 서약서 | | |
| 9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| | |
| 10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 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 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 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및 자산 확인 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 | 행정부지센터, 구청, 시청 | - 직접 방문하여 발급 -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※ “과세내역 없음” 인 경우도 발급 |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 준용 | | |
| 11.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|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| | |
| 12.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| |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| | | |
| 소득 자료 | 무소득자 | 사실증명 (신고사실없음)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| -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-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| |
| | 소득자 | 일반근로자 |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재직증명서 포함) | | 해당 직장,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|
| | | 신규취업자 |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(재직증명서 포함) | | 해당 직장 |
| | | 개인사업자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(사업자등록증 포함) |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|
| | | 신규사업자 |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,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(사업자등록증 포함) | |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|
| 법인사업자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(사업자등록증 포함)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| | | |
| 자산 자료 | 14.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[내계좌 한눈에]에서 본인명의 (금융, 주식, 보험 등 전체) 발급 후 작성 - 주거대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(대출 전체) 발급 후 작성 ※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※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| | (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) |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| |
| | 15.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(사본, 해당자만 제출) | | 금융결제원(인터넷) | | |
| | 16. [자동차 소유자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 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| | 주거래 은행 | | |
| | 17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 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| |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·월세인 경우 | | |
| 18.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- 대학 : 재직증명서 - 직장 : 재직증명서 |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, 정부24(인터넷) |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 준용) | | |
| 19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| | | | |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| | | ★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(입주 후 7일 이내 제출) | | |

※ 추가,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(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) : 청약홈 (www.applyhome.co.kr)

- 일반공급 제출서류 *모집공고 이후 발행분

| 제출서류 | 발급처 | 유의사항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 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, 정부24(인터넷) |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 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"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" 추가 | | |
| 3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| (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) | |
| 4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| | |
| 5. 공급신청서 | | |
| 6. 서약서 | | |
| 7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 | - 직접 방문하여 발급 -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
| 8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 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 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 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확인 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 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※ "과세내역 없음" 인 경우도 발급 | | |
| 9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 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, 정부24(인터넷) |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
| 10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| |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| | ★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(입주 후 7일 이내 제출) |

※ 추가,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(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) : 청약홈 (www.applyhome.co.kr)